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2058 |
|----------|-------|

발의연월일 : 2019. 8. 21.

발의자 : 이철규 · 이종배 · 정유섭

장석춘 · 정우택 · 박맹우

김기선 · 김규환 · 정갑윤

권성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점용료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 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p>제11조의5(점용료에 대한 특례)</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br/>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br/>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허<br/>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br/>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br/>면할 수 있다.</p> |